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·연구시설·복합시설 용지 공급 공고

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산입법"),「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산집법"),「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」(이하 "관리기본계획"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.

1. 공급대상용지

구분	전	체	기는	분양	금회	공급	비고
TE	필지수	면적(m²)	필지수	면적(m²)	필지수	면적(m²)	9125
산업시설용지	258	1,100,593	205	1,003,804	10	96,789	
연구시설용지	8	17,997	2	13,986	6	13,986	
복합시설용지	21	192,267	11	110,649	10	79,619	

1) 산업시설용지

소재지	용도	필지	필지	면	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공급방법
조세시	용포	번호	수	(m 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2525
		A1-1	1	1,689	511	1,445,910,675				계약완료
		A1-2	1	3,518	1,064	3,204,570,826				계약완료
		A1-3	1	3,850	1,165	3,556,764,750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2-1	1	1,709	517	1,528,520,864				계약완료
		A2-2	1	1,731	524	1,547,540,920				계약완료
		A2-3	1	2,688	81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-1	1	3,260	986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-2	1	13,803	4,175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-1	1	3,428	1,03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-2	1	3,242	98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-3	1	3,242	98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-4	1	3,427	1,03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-5	1	3,427	1,03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김해시		A4-6	1	3,242	981	"	입주	건폐율		계약완료(입주협약)
대동면	산업	A4-7	1	3,242	981	"	대상	70%	일반	계약완료(입주협약)
월촌리	시설 용지	A4-8	1	3,427	1,037	н	업종	용적율	공업 지역	계약완료(입주협약)
일원	용시	A5-1	1	5,269	1,594	"	참조	300%	시역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5-2	1	4,179	1,264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5-3	1	5,559	1,68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6-1	1	10,240	3,098	9,583,974,400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6-2	1	7,521	2,275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6-3	1	7,187	2,174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7-1	1	22,154	6,70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8-1	1	15,900	4,810	н			l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8-2	1	20,782	6,287	н			l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9-1	1	9,762	2,953	,,			l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9-3	1	4,684	1,417	"	1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9-4	1	5,066	1,532	"	1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0-1	1	1,653	500	"	1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0-2	1	1,656	501	п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
		필지	필지	면	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
소재지	용도	번호	수	(m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공급방법
		A10-3	1	1,656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0-4	1	1,655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0-5	1	2,643	800	2,391,537,051				계약완료
		A11-1	1	6,162	1,864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1-2	1	1,666	504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1-3	1	1,666	504	1,477,253,862				계약완료
		A11-4	1	1,704	515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1-5	1	3,949	1,195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1-6	1	1,676	507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1-7	1	1,666	504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1-8	1	1,666	504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2-1	1	7,946	2,404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2-2	1	4,876	1,475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2-3	1	3,147	95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3-1	1	40,481	12.246	37,853,131,360				계약완료
		A14-1	1	9,725	2,942	8,858,570,575				계약완료
		A14-2	1	4.146	1,254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4-3	1	4,136	1,251	고 8 전기 고 는 그 이어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4-3	1	4,146	1,251	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		1,254	2 767 511 252				계약원료(급구급략)
		A14-5	1	4,136		3,767,511,352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5-1		6,447	1,950					
		A15-2	1	3,006	909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5-3	1	3,011	911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5-4	1	6,116	1,850	5,571,107,212				계약완료
		A15-5	1	3,011	911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5-6	1	3,011	91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6-1	1	6,533	1,97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6-2	1	3,306	1,0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6-3	1	3,306	1,0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6-4	1	6,532	1,97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6-5	1	3,306	1,0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6-6	1	3,306	1,000	2,858,195,688				계약완료
		A17-1	1	1,802	545	1,696,740,320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17-2	1	1,762	53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7-3	1	1,762	53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7-4	1	1,762	53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7-5	1	1,762	533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7-6	1	1,762	533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7-7	1	3,451	1,044	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7-8	1	1,650	500	1,534,107,300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18-1	1	1,734	525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8-2	<u> </u>	1,734	525	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8-3	1	1,734	525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8-4	1	1,734	525	1,499,126,232				계약완료
		A18-5	1	1,734	525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8-6	1	1,734	525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8-7	1	1,734	525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8-8	1	1,736	525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19-1	1	41,570	12,575	37,932,907,584				계약완료
		A20-1	1	8,969	2,71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0-3	1	2,866	86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1-1	1	5,651	1,709	5,288,968,68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21-2	1	5,072	1,534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1-3	1	4,656	1,408	4,184,845,392				계약완료

소재지	용도	필지	필지	면	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공급방법
고세시	9.7	번호	수	(m 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0000
		A21-5	1	5,653	1,710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1-6	1	1,657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1-7	1	1,654	5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1-8	1	1,654	500	1,476,620,078				계약완료
		A21-9	1	1,654	5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1-10	1	1,654	500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1	1	5,597	1,693	5,238,428,19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22-2	1	3,179	962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3	1	3,179	96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4	1	3,179	96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5	1	5,596	1,69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6	1	1,654	500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7	1	1,654	500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8	1	1,654	500	1,419,955,692				계약완료
		A22-9	1	1,654	500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2-10	1	1,654	5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3-1	1	8,559	2,589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3-2	1	11.336	3,429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4-1	1	2,899	87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4-2	1	2,541	769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4-2	1	2,901	878	п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-			"				" \ "
		A24-4	1	2,897	876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4-5	1	2,541	769	п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4-6	1	2,899	87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5-1	1	2,900	877	п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5-2	1	2,541	769	п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5-3	1	2,899	877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5-4	1	2,899	877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5-5	1	2,541	769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5-6	1	2,899	877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6-1	1	5,220	1,579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6-2	1	4,873	1,474	· ·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6-3	1	5,431	1,643	· ·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7-1	1	10,832	3,27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7-2	1	10,690	3,234	9,371,367,120				계약완료
		A28-1	1	6,494	1,964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2	1	1,660	502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3	1	1,660	50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4	1	1,660	502	W .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5	1	1,660	50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6	1	1,660	50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7	1	6,494	1,964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8	1	1,660	502	· ·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9	1	1,660	502	n n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8-10	1	1,660	502	n n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			1 402 010 620				계약완료
		A28-11	1	1,660	502 502	1,492,019,620				계약완료
		A28-12	· ·	1,659		1,492,019,620				
		A29-1	1	6,494	1,964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2	1	1,660	50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3	1	1,660	502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4	1	1,660	502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5	1	1,660	502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6	1	1,660	50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
소재지	용도	필지	필지	면	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공급방법
-414	0.5	번호	수	(m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
		A29-7	1	1,659	502	1,481,083,863				계약완료
		A29-8	1	1,660	502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9	1	1,660	502	1,492,019,620				계약완료
		A29-10	1	1,660	502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11	1	1,660	50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12	1	1,660	502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29-13	1	3,175	960	2,718,038,125				계약완료
		A29-14	1	1,659	502	1,492,019,620				계약완료
		A30-1	1	9,128	2,761	8,002,042,944				계약완료
		A30-2	1	5,441	1,646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0-3	1	4,188	1,267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0-4	1	9,306	2,815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1-1	1	2,286	692	2,004,017,328				계약완료
		A31-2	1	1,656	501	1,421,672,688				계약완료
		A31-3	1	1,656	501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1-4	1	1,656	501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1-6	1	2,286	692	2,004,017,328				계약완료
		A31-7	1	1,656	501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1-8	1	1.656	501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1-9	1	1,656	501	1,431,691,488				계약완료
		A32-1	1	54,960	16,625	52,769,019,600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
		A33-1	1	6.013	1.819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2	1	3,438	1,040	*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3	1	3,438	1,040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4	1	3,438	1,040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5	1	3,435	1,039	3,173,373,22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
		A33-6	1	1,715	519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8	1	1,653	500	포용전기 포는 그 이어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9	1	1,660	50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10	1	1,660	50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10	1	1,662	503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11	1	1,661	50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3-12		-	502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1	1,661		и				
		A34-1	1	5,956	1,802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2	1	3,647	1,103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3	1	3,647	1,10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4	1	3,647	1,103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5	1	3,647	1,103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6	1	6,797	2,05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7	1	1,654	500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8	1	1,654	500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9	1	1,654	5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10	1	1,654	500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4-11	1	1,654	500	1,476,620,078				계약완료
		A34-12	1	1,654	500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	1	5,238	1,584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2	1	1,658	50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3	1	1,658	502	1,418,516,275				계약완료
		A35-4	1	1,658	502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5	1	1,658	50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6	1	1,658	502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7	1	1,658	502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1	A35-8	1	1,657	501	1,499,348,049				계약완료

A 70 71	0-	필지	필지	면	!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7708
소재지	용도	변호	수	(m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공급방법
		A35-9	1	4,501	1,362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0	1	1,657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1	1	1,657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2	1	1,657	501	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3	1	1,657	501	1,412,506,336				계약완료
		A35-14	1	1,657	501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5	1	1,657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5-16	1	1,657	50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6-1	1	3,230	977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6-2	1	5,230	1,58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7-1	1	3,118	94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7-2	1	33,409	10,106	31,240,054,656				계약완료
		A37-3	1	3,117	94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7-4	1	3,108	940	705172 7 11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1		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9-1 A39-2	1	9,883	2,990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	0,0.0						
		A39-3	1	3,570	1,080	3,108,034,860				계약완료
		A39-4	1	3,570	1,080	3,230,339,490				계약완료
		A39-5	1	3,570	1,080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9-6	1	2,479	750	2,142,349,944				계약완료
		A39-7	1	3,391	1,02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9-8	1	3,391	1,02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9-9	1	3,391	1,02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9-10	1	3,391	1,026	,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39-11	1	5,409	1,636	5,062,472,41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A40-1	1	9,511	2,877	8,337,799,128				계약완료
		A40-2	1	4,672	1,41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0-3	1	4,673	1,414	4,200,125,111				계약완료
		A40-4	1	4,654	1,408	4,023,606,392				계약완료
		A40-5	1	5,167	1,56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1-1	1	2,550	77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1-2	1	2,622	79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1-3	1	2,550	77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1-4	1	3,804	1,151	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1-5	1	3,876	1,17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1-6	1	1,813	548	1,639,600,884				계약완료
		A41-7	1	1,991	602	1,721,315,068				계약완료
		A42-1	1	2,550	771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2-1	1	2,530	793	포경권기 모든 그 이야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		-,	793					계약원료(접구엽약)
		A42-3	1	2,550		2,322,812,850				
		A42-4	1	3,392	1,026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2-5	1	3,463	1,048	,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2-6	1	3,392	1,026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3-1	1	2,550	771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3-2	1	2,622	793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3-3	1	2,530	765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3-4	1	3,804	1,151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3-5	1	3,808	1,152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3-6	1	2,226	673	н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4-1	1	26,807	8,109	24,417,773,042				계약완료
		A45-1	1	13,754	4,161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5-2	1	2,992	905	"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5-3	1	2 577	1.002	п				게야아크/이즈점이
		A45-3	1	3,577	1,082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
A 70 71	0.5	필지	필지	면	.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77 7 11 11 11
소재지	용도	번호	수	(m 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공급방법
		A45-4	1	3,907	1,182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5-5	1	4,060	1,228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5-6	1	4,190	1,267	и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5-7	1	4,314	1,305		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1	1	3,481	1,053	н	1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2	1	1,813	548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3	1	1,813	548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4	1	1,813	548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5	1	3,282	993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6	1	3,063	927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7	1	1,813	548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8	1	1,813	548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9	1	1,813	548	и]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6-10	1	1,656	501	и	1		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A47-1	1	4,195	1,269	3,926,247,32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진	여분 힙	기계	10	96,798	29,279	91,830,096,215(잔여분)				

[※] 잔여용지의 경우 재분양 사유가 발생시에는 「산입법 시행령 제40조」에 근거하여 분양기를 재산정하여 공급함.

2) 연구시설용지

소재지	용도	필지번호	필지수	6	변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공급방법
조세시	용포	글시킨오	필시ㅜ	(m³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0808
		B1-1	1	2,581	781	2,415,648,235		건폐율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B1-2	1	1,653	500	1,547,100,55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김해시		B1-3	1	1,653	500	1,536,896,586	입주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대동면	연구	B1-4	1	2,581	781	2,399,715,722	대상	70%	일반 공업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월촌리	시설 용지	B2-1	1	2,357	713	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	업종	용적율	지역	계약완료(입주협약)
일원		B2-2	1	1,654	500	н	참조	350%	.,,	계약완료(입주협약)
		B3-1	1	2,810	850	2,629,977,350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B3-2	1	2,708	819	2,517,795,496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7	나여분 힘	· 라계	6	13,986	4,231	13,047,133,944(잔여분)				

[※] 잔여용지의 경우 재분양 사유가 발생시에는 「산입법 시행령 제40조」 근거하여 분양기를 재산정하여 공급함.

3) 복합시설용지

소재지	용도	필지번호	필지	면	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공급방법		
그세시	ᇹᆂ	크시단호	수	(m²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0000		
		C1-1	1	51,098	15,457	55,179,759,338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		C1-2	1-2 1 2,314 700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				계약완료				
		C1-3	1	4,122	1,247	5,069,569,482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		C1-4	1	2,000	605	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			계약완료		
김해시		C1-5	1	1,997	604	2,456,072,357	입주	건폐율 70%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대동면	복합 시설	C1-6	1	1,795	543	2,207,636,395	대상		일반 공업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월촌리 일원	용지	C1-7	1	2,747	831	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업종 참조	용적율 350%	지역	계약완료		
		C2-1	1	1,659	502	N				계약완료		
		C2-2	1	1,653	500	2,032,993,293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		C2-3	1	1,983	600	2,438,854,023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		C2-4	1	1,659	502	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					계약완료
		C2-5	1	2,315	700	2,847,174,515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		

A TIITI	용도	필지번호	필지	면	적	분양가격	유치	건축	용도	공급방법
소재지	중포	필시킨오	수	(m³)	(3.3m²)	(원/m²)	업종	제한	지역	2020
		C2-6	1	2,315	700	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			계약완료
		C3-1	1	4,638	1,403	5,727,378,078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C3-2	1	5,009	1,515	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			계약완료
		C5-1	1	4,969	1,503	"				계약완료
		C5-2	1	4,969	1,503	6,359,728,689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C5-3	1	5,048	1,527	6,814,199,288				잔여용지(우선순위선정)
		C6-1	1	6,973	2,109	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7조에 따름.				계약완료
		C7-1	1	42,408	12,828	м				계약완료
		C7-2	1	40,596	12,280	м				계약완료
7	·여분 힙	가 계	10	79,619	24,084	91,133,365,647(잔여분)				

※ 잔여용지의 경우 재분양 사유가 발생시에는 「산입법 시행령 제40조」 근거하여 분양가를 재산정하여 공급함.

2. 입주자격

- 산집법 제2조 제1호,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 - ** 필지별 지정된 유치업종 외의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, 이와 관련하여 "산업집적법", "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"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함.
- 입주제한가능 업종
-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를 제한한 업종

3. 입주대상

1)산업시설용지(잔여필지 기준)

용도	필지번호	유치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표
	A1-3		
	A6-1		
	A17-1		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20〜22, C24~C31,H52
사업	A17-8	복합산업	※ C24코드 중 주물, 주조 입주불가
시설	A21-1		※ 024교로 중 구설, 구조 입구절기
용지	A22-1		
5/1	A47-1		
	A32-1		
1	A33-5	메카닉스	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24~31,H52
	A39-11		

2)연구시설용지(잔여필지 기준)

용도	필지번호	유치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표
연구	B1		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 용도(연구시설용지 연면적의 70% 이상)
시설	B2	연구개발	- 연구제발(M70),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(M72), 기타전문·과학기술 및 기술 서비스(M73), 교육서비스업(P85) ■ 준공업지역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'건축법 시행령, 별표1에 따른
용지	В3		-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, 총 연면적의 30%이하에 한함)

3)복합시설용지(잔여필지 기준)

용도	필지번호	유치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표
보다	C1	메카닉스	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- C24,C29,C30,C34,H52,M72 * C1블록은 C29업증 중 일반제조업 허용, * 1신업집접 활성화 및 고상권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증 * 대기예출시설, 약취매출시설 입주불허 * 주환 1~4층 사업장 입주불허 * 특청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불허 * 특청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불허
시설 용지	C2	친환경첨단산업 바이오, 나노, 일렉트로닉스	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- C20, C21, C26-C29, C34, H52, M72 ※ 대기배출시설, 약위배출시설 입구불허 ※ 주월 1-4층 시업장 입주불어 ※ 특성수실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불허 ※ C2등록 C0-C20업층 중 인반제조업 허용 ※ (C4업접적 활성화 및 공장성템에 관한 법률, 에 따른 도시원공장과 침단업증 ※ 정문시설(주가지역)과 인접한 C3,C5,C6블록은 남축 도로경제선으로부터 20m이내
	C3		
	C5		
	C6		

- ※ 업종별 업종코드번호에 맞는 대상토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.
- ※ 입주제한 :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참조

4.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

1) 입주우선순위

■ 1순위 : 김해시와 입주협약 또는 투자협약(MOU)을 체결한 업체, 사업시행자(출자자를 포함한다), 사업시행자와 공급(청약)계약을 체결한 업체

■ 2순위 : 중견기업 이상 업체

■ 3순위 : 유치대상업종 중 첨단업종 영위업체

■ 4순위 : 재정적 우수기업

■ 5순위 : 김해시 3대 전략산업, 12대 신산업 및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업종

■ 6순위 : 김해시 이전기업(외국인투자기업 포함) ■ 7순위 : 공인기관(정부 등) 우수기업 선정 업체

2) 공급 및 입주절차



3) 신청방법

- 입주신청은 제출서류("5. 제출서류" 참조)를 작성 후 2부를 ㈜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사업관리단에 제출(직접방문, E-mail, 우편접수 가능)하여야 함.
- ※ E-mail의 경우 사본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.
- 대리인에 의한 입주신청은 1업체당 1명에 한하며, 동일 대리인이 여러 업체를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한 모든 필지를 무효처리 함.

4)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

■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

출하고,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추첨대상자 공고(동일 순위 경합시) 및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

- 선정된 대상자는 공고에 정한 기일 내에 시행자 및 관리단과 출자계약. 입주계약. 공급계약을 체결함
- 입주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 함.
-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 방법
- 입주우선순위별로 결정하되 동 순위일 경우 1차 산집법 시행규정한 첨단업종, 2차 무공해업체, 3차 김해지역 소재업체, 4차 완제품생산업체 순으로 결정하되, 또 다시 동 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입주자 선정
- ※ 입주심사 후 입주심사 결과와 함께 추첨대상자를 공지사항(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 홈페이지)에 게시하고, 게시된 추첨대상자는 추첨일시에 추첨장소에 참석하여야 함.

5. 제출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	
입주신청시	공통 -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1부 (소정양식) -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1부 (소정양식) -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2부 (소정양식) - 공장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각 2부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주민등록등본(개인) 2부 - 신분증, 인감도장(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제출) ※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1순위 - 입주협약서 또는 투자협약서 - 공급(청약)계약서		
입주계약시	-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1부 - 신분증 및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) -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		
공급계약 체결시	- 별첨 공급계약관련 제출서류 참조(소정양식)		

- ※ 공장등록증 등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이며, 모든 제출서류는 **공고일 이후 발급분**에 한함.
- ※ 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, 증원, 감원이 불가 함
- ※ 공동명의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,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
- ※ 각종 양식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(주) 인터넷 홈페이지 http://qdicland.com 에서 다운로드 가능

6. 공급일정 및 장소(산업시설용지)

구 분	기 간	장 소	
분양공고	2023.07.07.(금) ~ 2023.07.21.(금)	일간신문. 산업입지정보시스템, 팩토리온,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 홈페이지	
분양신청	2023.07.07.(금) ~ 2023.07.21.(금)	㈜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사업관리단	
입주심사	2023.07.24.(월) ~ 2023.07.26.(수)	(사)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	
추첨대상자 공고	2023.07.27.(목)	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 홈페이지	
추첨 (분양대상자 발표) 2023.07.28.(금)		별도 공지 (대상자 없을 시 생략)	
공급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	2023.07.31.(월)	별도 공지 (추첨 대상자 없을 시 2023년 07월 28일 입주계약 및 공급계약 체결)	

- ※ 심사 및 추첨결과 낙첨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
- ※ 분양신청 및 입주계약 체결 시간 10:00~17:00. 공급계약 체결 시간 10:00~17:00
- ※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(분양대금의 10%)을 지정계좌에 납입 후계약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㈜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사업관리단으로 방문하여 공급계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- ※ 상기 공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7. 분양가격 및 대금납부방법

1) 산업시설 연구시설

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 제5항에 의거 획지별 위치형상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함.

추정 조성원가 산출액: 929,762원/m², 3,074,000원/3.3m²(평)

2) 복합시설

■ 산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에 따라 "추정 조성원가(50%) + 감정평가(50%)"로 산정의 거 산정함.

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: 조성원가(추정조성원가 ⇒ 향후 정산)

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외시설 :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

3)대금납부조건

실제 납부일						
구 분	계약금	중도금	잔금			
실제 납부시기	계약체결일	계약 후 1개월	공사준공일로 부터 15일이내			
비 율	10%	80%	10%			

- ※ 공급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당초 약정일 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근거하여 정산금 납부시 선납이자를 일할정산함.
- ☀ 잔금 납부시 재산정한 조성원기로 정산예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준공 후 최종 정산을 실시함.
- ※ 상기 납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확정된 스케쥴은 공급계약서에 명기함.

4)정산

■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**사업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중감이 있을 수 있으며**,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며, 산업시설용지(연구시설용지, 복합용지 포함) 분양가격은 추정 조 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**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확정한 가격에 의거 정산**을 실시함.

8.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

구 분	토지사용 가능시기	소유권이전 가능시기	
시기	2023년 3/4분기	2023년 4/4분기 준공 후	

- **토지사용은 분양대금 전액 납부한 경우에 기능**하며, 토지사용시기는 부지조성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건축을 위한 인·허가 신고시는 분양금 50%이상 납부하고, 잔여금에 대한 보증서(금융기관,보증기관) 제출 시 가능함.
- 준공 인가 전 토지 등의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, 해당 필지 내에 국·공유 재산의 소유권 미확보시에는 준공 인가 전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.
-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,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(2023.12.31. 이후 예정)에 가능하며, 신청인은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(처분, 담보 제공 등) 제한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함.

9.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

- 금회 분양토지 중 산업시설용지는 "산집법"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, 세부적인 사항은 "사집법"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산업용지를 소유한 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처분이 제한됨("산집법"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)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 가 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
-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할 수 있음("산집법" 제41조)
- 입주계약체결 후 법정기한 내 공장 등의 건설이 착수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("사진번" 제42조)
- 입주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("산집법" 제43조)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아니한 때에는 입주 선정을 취소 함.
-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입주선정 취소
-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(변경)사항 및 환경·교통에너지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또는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"신집법"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함.

10. 유의사항

- 공급대상토지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전체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 사업과정에서 국토교통부, 김해시 등 관계 행정기관, 한국전력공사 등 기반시설 공급기관 협의결과,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변경, 재해영향 저감방안 변경,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등 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(용도, 업종, 면적 등) 및 주변토 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,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되거나,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 한 될 수 있습니다.
- 매수인은 공급공고문, 지구단위계획(변경 포함), 토지이용계획(변경 포함), 개발계획・실시계획(변경 포함) 승인내용 등 각종 인・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,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(재협의 내용 포함), 에너지 사용계 획 이행조건, 용수・폐수처리시설 처리 용량, 건축・주차장 등 토지이용에 대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한 사항 등 관련 자료(도면 및 현장확인 포함) 등을 반드시 사전에 열람・확인(향후 변경사항 포함)하여야 하 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.
-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, 건축관련 제반 법규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・확인・준수합니다. 또한 각종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 용에 따라야 하며,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・개정으로 강화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니다.
-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. 특히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한계선,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, 주차장 확보는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야 합니다.
-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, 현황(형상, 고저, 암반, 필지내 경사, 법면상태, 성토재료(암성토 등) 등),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(혐오시설 등)을 직접 확인하여 수인하는 조건 및 향후 건축에 필요한 성토, 절토, 옹벽설치 등 추가 공사 필요 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양 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. 계약체결 후에는 지적과 현황의 상이, 지질 및 지하구조물, 폐기물(폐토사 및 유류오염물 등), 문화재의 존재를 이유로 하자당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- 분양토지의 터피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(원지반 하부)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, 구조물 등이 발생되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 준수 하여야 하며, 당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교통영향분석・개선대책(변경심의포함)에서 제시된 '차랑진・출입허용구간' 및 '가・감속차로'를 시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가로등(보안등), 공원등, 교통신호등, 표지판, 가로수 및 기타 공공시설물은 지구내 제반시항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시전에 확인 후 설계(진출입로, 총입문 등)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본 단지는 지역 특성상 연약지반지역으로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인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 사용 시 유의할 사항(별지 참조)을 열람한 후 매수인은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 지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·시공하여야 합니다.

-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 사용시 도로, 상하수도, 경계석,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・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.
- 공급금액에는 지구단위계획, 암반, 법면발생,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, 전력, 통신, 상수,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 의하여야 합니다. 도로, 공원, 상ㆍ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의 공시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 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, 전기, 통신,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(한전, KT, 경남에너 지 등)에서 공급하며 설치 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기능성이 있습니다.
-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건축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, 토목공사 등은 매수인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특별한 사유 없이 공장설립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건축착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매계약 해제되며, 계약금은 귀속됩니다.
-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,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해당 토지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고, 제세공과금(재산세 등)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인터넷 게시공고문, 입주계약서,유의사항 등은 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,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
※ 산업단지계획, 지구단위계획,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, 각종 양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대동첨 단산업단지(주) 홈페이지(http://gdicland.com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이래 연락 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급안내 및 관계도서 열람

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15, 경보더숨시티 203호

TEL. 055-329-0460

KS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사업관리단

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4번길 89

TEL. 051-501-5003 / FAX. 051-501-4003

2023. 07. 07.

■ 사업시행자

■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

■ 관리기관

GOICC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

■ 공급대행자

KS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사업관리단



연약지반상 건축물 안전시공 유의사항

- 1 필요시 지정용도 사용에 따른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니다
- 2.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에서 축조되는 건축물의 침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토지를 분양받은 후 외부토사의 용지내 성토지양
 - ② 굴착공사에서 배출된 굴착토사의 장기간 지상적재 지양
 - ③ 건축물의 상부하증이 기초지반의 지지력보다 크지 않게 함
 - ④ 얕은 기초를 가진 건축물의 중량화를 피함
 - ⑤ 중량 지장물의 지상적재 피함
 - ⑥ 지하수위 유출 및 배출 억제
 - ⑦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심정개발 억제
 - ⑧ 압밀침하가 완료된 후 건축물 축조
 - ⑨ 원지반을 굴착하여 배토중량을 고려함
 - ⑩ 기타 건축물의 침하에 영향을 주는 사항 금지
- 3. 건축물 상부구조의 설계는 건축사 등 건축기술자, 하부구조 설계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목기술자, 건축물 터파기공사, 기초공사, 관로공사 등 토목공사는 해당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 직한니다.
- 4. 건축물 배치시 연약지반과 양질지반의 경계면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것을 피하고 연약지반의 두께가 상이 한 경계면에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 전용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연약지반상에 균등하증이 작용토록 하여야 합니다.
- 5. 건축물 주변의 용지에 굴착토사를 적재할 경우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축주는 용지조성시 당초의 부지 계획고를 준수하여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니다.
- 6. 건축관계자는 용지 계획고를 결정하기 전에 과한 추가성토 등으로 지반의 과대압밀침하로 인한 지반파괴 및 구조물 접속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.
- 7. 굴착토사를 굴착상단 지면의 직상부에 적재하게 되면 과재하중으로 굴착면이 위험하게 되고 심하면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곳에 적재하여야 하며 굴착토사를 굴착상단 지면의 한 장소에 높게 쌓아두면 지반침하가 발생될 수 있어 부득이 굴착토사를 지상 적재할 경우에는 균등한 높이로 가능한 넓게 쌓아두어야 안전합니다.
- 8. 굴착 공사 중 인접구조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육안 또는 필요시 계측기 등으로 상세히 관측하여야 합니다.

- 9. 건축물 굴착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가 불량할 경우 관로주변에 참하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면의 되메우기 부분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되 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10. 연약한 택지에서는 건축물과 주변의 시설물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및 주변시설물은 기초를 보강하여 지반침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한 건축물의 소규모 구조물(계단, 주차장, 정문, 담벽 등)에 대한 기초공사도 철저히 시공해야 하며 기초보강 대상 구조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
 - ① 거축물 출입구 계단
 - ② 건축물과 만나는 보도, 포장, 화단
 - ③ 운동장 스탠드 및 식수대
 - ④ 학교, 관공서 등의 정문
 - 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
- 11. 각종 지중관로의 접속 경계부에 대해서는 부등침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박스, 보호구조물을 설 치하거나 스리브 접합등 유연성 있는 접합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지반침하 및 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을 갖는 제품사용이 바람직합니다.
- 12. 관거 부등침하는 관거 파손으로 누수 또는 지하수의 침투를 초래하여 관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유지 관리면에서 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초공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는 양질재료 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. 특히, 부실시공에 의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적정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공하여야 합니다.
- 13. 연약지반상에 축조되는 건축물, 지중관로 등의 시설물은 장기적인 침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시설물 주변의 지면에 추가적으로 토사, 지장물 등을 적재하게 되면 지면 침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토록 하고, 시설물을 추가 증축하는 경우 지반지지력 및 지반침하량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14.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에서 피압대수층 등에서의 심정개발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매입대상용지 및 인접부지에 장기 침하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- 15.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는 현장내 토취원으로부터 확보된 건설재료(토사 및 암버럭) 등을 이용하여 조성 된 부지로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 터파기 및 구조물 기초공사시 암버럭(최대직경 300mm이하)이 출현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토지의 사용자는 이를 감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- 16. 본 현장은 PBD공법 및 여성토공법 등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연약지반처리와 관련하여 허용잔류침하량에 따른 1차 잔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허용잔류침하량에는 2차 압밀에 따른 장기 침하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의 사용자는 연약지반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.